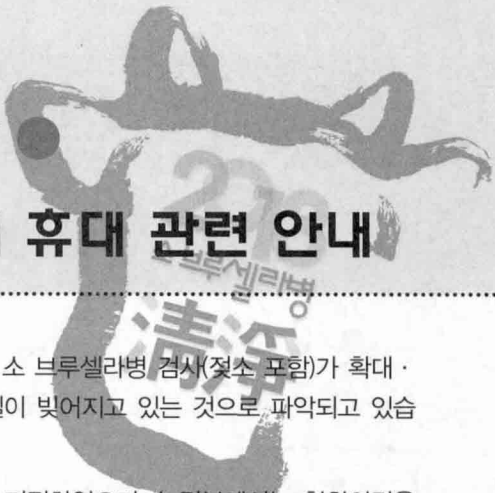


# ● 공 지 사 항 ●

## 젓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관련 안내



[농림부] 소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 변경지침 시행(08.1.1)과 관련, 소 브루셀라병 검사(젓소 포함)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일선 낙농가의 혼선과 더불어 소(송아지)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농림부에 젓소 브루셀라 검사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협회의견을 반영하여 젓소(원유생산농장)에 한해 간소화된 지침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회원농가들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목장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 지침으로 인해 한·육우 및 젓소 검사(증명서 발급)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회원농가의 원활한 소(송아지) 거래를 위해 사전에 최대한 신속히 시·군에 검사(증명서 발급) 신청 및 귀표 부착을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젓소 브루셀라 검사 관련, 협회의견 반영(최종변경)내용

구분	기존 조정내용	문제점	개선사항
정기 검사	○농장단위 연 6회 이상 원유검사 (MRT) 실시 : 기존동일	-	○좌동
검사 증명서 휴대	<b>휴대 대상</b> ○거래되는 모든 소 (송아지) *거세수소 제외	-	○좌동
	<b>증명서 발급</b> ○개체별 채혈검사 실적 ○국가공식귀표 부착 *송아지는 어미소 채혈검사 실적으로 증명서 발급	초유떼기 송아지 거래시 기 지연 농가불편 및 피해발생	○착유소 및 송아지는 해당농장 원유검사(MRT) 실적으로 검사증명서 발급 ; 국가공식귀표 생략가능(자체귀표는 반드시 부착) *단 초임만삭우 생산송아지의 경우, 어미소 원유검사 실적이 없으면 제외 ○비착유우(육성우·수소·초임우등) 및 초임만삭우 생산송아지는 개체별 채혈검사 실적으로 검사증명서 발급 ; 국가공식귀표 부착거래 단계
	○구매자 변경시, 유효기간 이내라도 재검사후 신규 검사증명서 휴대·거래 ex) 밀소농장→육우비육농장	송아지만 사육하는 밀소농장은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낙농·육우농가간 송아지 유통이 차단됨	○검사증명서 유효기간내 1회(밀소농장→육우농장)에 한해 재검사 생략 - 밀소농장주는 낙농가로부터 수령한 검사증명서를 다음 거래(육우)농장으로 전달 - (젓소송아지 거래에 한해)검사증명서 유효기간 : 2개월 → 4개월 - 젓소송아지 거래용 별도 검사증명서에 구매자 2명까지 표기 가능 ex) 소유자 : 낙농가, 구매자1 : 밀소농장주, 구매자2 : 육우농장주
<b>거래 단계</b> ▶농가가 시·군에 신청 → ▶시·군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증명서 발급 의뢰 →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증명서 발급	검사증명서 발급 기간 지연 농가불편 및 피해발생	(3.1일부터)▶농가가 시·군에 신청 → ▶시·군에서 검사증명서 발급 ※가축위생시험소는 격월 간격으로 검사능가 명단을 관할 시·군에 사전송부 → 시·군은 농가신청시 이를 확인후 검사증명서 발급 •발급기관장 : (현행)가축위생시험소장 → (3.1일부터)시장·군수	
<b>긴급 도축</b>	미규정	농가불편 및 피해발생	○긴급도축을 요하는 경우, 검사증명서 및 국가공식귀표 없이 출하 가능 : 단, 수의사진단서 첨부 및 자체귀표 부착